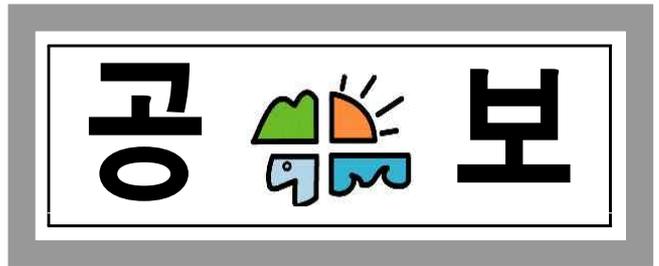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741호 2012년 12월 20일(목)

공 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회 람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서를 발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2. 20.

속 초 시 장

1. **공고기간** : 2012. 12. 20 ~ 2013. 1. 3. (15일간)
2. **공고장소** : 각 시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1. 처분의 제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2. 당사자	성 명	(주)부앤알이 대표김대현	주 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5-10 남촌빌딩 3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 용	과태료 : 금753,200원					
5. 대상 부동산의 표 시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972-50 (답 / 140㎡)					
6. 법적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의 2					
7. 문의사항	기관명	속초시청	부서명	민원봉사과	담당자	신명희
	주 소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 469-6)				
	연락처	033)639-2729 팩스 : 033)639-2229				